

요약

지난 10년간 호주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증가하며 정신건강 관련 보험금 청구율이 크게 증가했음. 특히, 산재보험에서도 정신건강으로 인한 청구가 크게 증가했으며, 일부 주(州)에서는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산재보험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논의 중에 있음. 이에 호주생명보험협회는 비용 전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통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호주 통계청의 2020~2022년 정신건강 및 웰빙 국가조사에 따르면, 16~85세 인구 중 42.9%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으며, 21.5%는 최근 12개월 내에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음¹⁾
 - KPMG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에서 지난 10년간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 국민 평균 이용률은 매년 2.9%씩 증가했으며, COVID-19 시기에 일시적으로 급증했고, 이후 2022~2023년 서비스 이용률이 COVID-19 이전(2018~2019년)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²⁾
 - 호주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호주 RGA(2025)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직장 스트레스, AI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음³⁾
 -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조기 인식과 대응은 강화되었으나, 동시에 경미한 스트레스나 정상적 정서 반응까지 정신건강 문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KPMG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건강 관련 보험금 청구율이 크게 증가했으며(특히, 30~40대에서 급증), 영구장애는 청구 건수 증가가, 임시장애는 청구 기간이 확대된 특징이 있음
 - 정신건강 관련 보험금 청구에는 영구장애 청구와 임시장애 청구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영구장애의 경우 개인이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임시장애 청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을 대체하는 형태로 주기적인 보험금이 지급됨
 - 30~40대의 청구율은 2013년 100만 명당 37.9건에서 2022년 314.9건으로 731.7% 급증했으며, 전체 청구 건수 중 30~40대의 비중도 10.3%(2013년)에서 36.0%(2022년)로 확대됨
 - 2024년 정신건강 관련 생명보험 지급액은 22억 호주달러로 5년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정신건강은 전체 영구장애 청구의 약 3분의 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⁴⁾

1) Council of Australian Life Insurers(CALI)(2025. 7. 11.), "Mental ill health is straining Australia's safety net"

2) KPMG(2024. 11.), "Australia's Mental Health CheckUp"

3) RGA(2025. 12.), "Under Pressure: Millennials' mental health disability claims soar"

4) Council of Australian Life Insurers(CALI)(2025. 7. 11.), "Mental ill health is straining Australia's safety net"

- 지난 10년간 영구장애 청구율 증가의 79.6%는 정신건강 청구로 인한 것이었으며, 임시장애 정신건강 청구의 경우 건수는 감소했지만, 청구의 평균 기간이 2014년 4.5년에서 2022년 5.8년으로 1.3년 증가함

○ 특히, 산재보험에서는 2023~2024년 중대 산재 청구에서 정신건강으로 인한 청구가 12%(1만 7,600건)를 차지했고, 병가 기간(중앙값 35.7주)과 보상금(중앙값 6만 7,400호주달러) 모두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⁵⁾

- 2023~2024년 정신건강으로 인한 산재 청구는 전년 대비 14.7%(2,300건) 증가한 수준이며, 지난 10년 동안 161.1%(10,900건) 증가하며 다른 주요 상해 유형 그룹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냄
-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괴롭힘·직장 내 따돌림(33.2%), 업무압박(24.2%), 폭력·괴롭힘 노출(15.7%) 순으로 나타났음
- 정신건강으로 인한 병가 기간의 중앙값은 35.7주로 전체 병가 기간 중앙값(7.4주)에 비해 약 5배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정신건강으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의 중앙값은 6만 7,400달러로 전체 보상금 중앙값(16,300달러)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호주의 일부 주(州)에서는 산재보험 부담 완화를 위해 산재보험의 정의·자격요건·지급요건을 조정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시행되었음⁶⁾

- 호주의 일부 주 정부는 최근 정신질환 관련 산재 신청이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산재보험에 대해 정의·자격요건·지급요건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시행·논의 중에 있음

○ 호주생명보험협회는 해당 법안 개정에 대해 정신건강 관련 비용이 민간보험·공공(의료·복지)으로 전가될 수 있어 정부의 통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⁷⁾

- 호주생명보험협회는 직장 내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문제를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이 강화될 경우 산재에서 거절된 청구가 민간 생명보험 또는 공공(의료·복지)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보험의 보험료 인상·보장 축소·가입 유지 어려움으로 민간 보장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함
- 또한, 이 경우 공공의료·복지 지출로 부담이 이전되면서 정부 예산에 추가 압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호주 정부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지출은 2018~2019년 118억 호주달러에서 2022~2023년 132억 호주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단순한 보장 축소에 그치지보다,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빠르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호주의 사례는 정신건강 청구가 확대되고 지급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민간보험 손해율과 산재·공공지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예방·조기 치료 중심의 사전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5) Safe Work Australia(2025. 10. 16.), "Key Work Health and Safety Statistics Australia 2025 (latest release)"

6) The Guardian(2025. 6. 2.), "Psychological injuries at work are now taken seriously, which is good, but it's costing billions. So what is NSW proposing?"; WorkSafe Victoria, "Mental injury eligibility – determining if employment is the predominant cause"

7) Council of Australian Life Insurers(CALI)(2025. 7. 22.), "Workers Compensation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25"